

##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



구 미 시

##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

|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|--|
| 의 안<br>번 호 |  |
|--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1. 보고이유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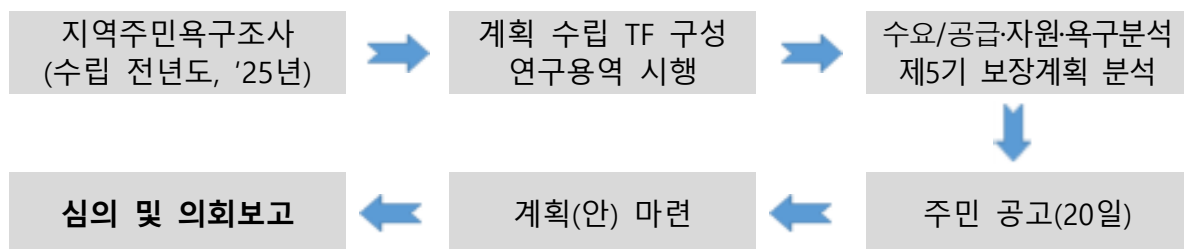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

나. 필 요 성 : 4년 주기 법정계획

다. 수립 범위 및 과정

- 수립 범위 : 사회보장 전 영역(복지, 고용, 주거, 건강, 보호·안전 등)
- 수립 과정



라. 수립일정

| 연번 | 시기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  | '25 7~11월 | ▶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주민욕구조사   | 1,000가구 |
| 2  | 4월        | ▶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   |         |
| 3  | 5~6월      | ▶ 착수보고회, 제5기 계획·욕구조사·지역현황 분석 |         |
| 4  |           | ▶ 분과·읍면동협의체 FGI, 간담회 등 의견수렴  |         |
| 5  | 7~8월      | ▶ 중간보고회, 주민공고, 실무대표협의체       |         |
| 6  | 9월        | ▶ 의회보고, 경북도 제출               |         |

마. 주요내용

| 구분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목표설정 | 일터에서 일상까지, 삶의 가능성이 커지는 구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전략체계 | 지역사회보장<br>사업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1. 일자리로 잇는 자립과 소득보장      | 전략별<br>6개 사업<br>배치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2. 생애 틈새를 메우는 촘촘한 돌봄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3. 관계로 잇는 일상, 고립 없는 안전망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4. 노동자의 건강한 일상과 일터 조성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지역사회보장<br>발전 전략<br>(고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1.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2. 담당인력 역량강화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3.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4.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수립기준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비사업 제외(공모사업은 가능)<br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공약사업 검토 및 선정<br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사업 계속 반영<br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고용(근로자), 건강·돌봄, 위기 안전망 중점<br>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강화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참고사항 | ▶ 인구 현황 및 고령화 진입<br>▶ 1인 가구 증가 및 고용 취약성<br>- 1인 가구 : '23년 77,345명 → '25년 83,101명<br>- 실업률 상승, 청년 여성 및 중장년 남성 고용 기반 약화<br>▶ 건강 지표 및 주민 욕구(IPA 분석)<br>- 우울증상 유병률 : 7.3% (전국 시군구 중 3위)<br>- 주관적 건강인지율 : 38.1% (전국 하위 4위)<br><b>❑ 최우선 개선 필요 영역 : 고용, 건강(정신)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바.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(과업)

| 연번 | 분야         | 세부사업(과업)명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지역사회보장사업전략 |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         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           | 사회적경제 구미 상생 프로젝트           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           | 구미영 스타트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           | 경력단절여성 취·창업 지원 사업            |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           | 구미형 일자리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           | 신중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(일자리 연계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           | 구미+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          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           |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              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           |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           | 돌봄로봇(마이봄) 활용 치매환자 관리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           | 중증장애인 응급안전·긴급돌봄 지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           | 조부모 손자녀 돌봄 강화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           | 바우처택시 운영                   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           | AI 스마트 돌봄서비스 통합관제·출동 시스템 운영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           | 구미마음 톡톡카페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|            |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구미 희망 더하기 사업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|            | 1인가구·고립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 |            | 찾아가는 이동 건강 서비스 운영(찾아가는 행복병원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 |            |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          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 |            |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| 중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 |            |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2 |            |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(외래재활센터) 운영 지원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3 |            | 고령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4 |            |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5 |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 | 전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|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            |
| 26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·동 인적안전망 발굴 네트워크 강화       |
| 27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              |
| 28 |            | 사각지대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 배달지원사업          |
| 29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정수급 방지 홍보활동                 |
| 30 |            | 부정수급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정수급 방지 교육                   |
| 31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2 |            | 보장계획역량강화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체계 교육 지원          |
| 33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본교육 지원      |
| 34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·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교육 지원   |
| 35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공모전 운영            |
| 36 |            | 대응역량강화                       | 상호연계협력을 위한 소통 및 교육 지원        |
| 37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·동 맞춤형복지팀 직무역량 강화         |
| 38 |            | 지역사회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   | 민관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9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화            |
| 40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·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      |
| 41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읍·면·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수립·실행 지원 |
| 42 |            | 통합돌봄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합지원회의 활성화                   |
| 43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               |
| 44 |            | 정주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두를 위한, 구미형 무장애 인프라 조성       |
| 45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        |
| 46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|
| 47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             |
| 48 |            | 인프라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| 복지정보 통합플랫폼 구미복지로 운영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약계층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지원          |

3. 참고사항 : 관계 법령

## 관계 법령

### 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역사회보장계획”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의 보고(보고의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·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(이하 “지역사회보장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20조(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)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도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에 대한 보고(보고의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확정된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시·도사회보장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와 해당 시·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

제4조(대표협의체)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5. 읍·면·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,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·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, 읍·면·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| 복지정책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박 용 자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팀 장   | 이 현 숙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손 윤 준<br>(480-5102) |